

第235回國會 (臨時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1月20日(月)

場 所 第3會議場(145號)

議事日程

-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
2.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3.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4.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된案件

-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위원회안) 1
2.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위원회안) 2
3.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위원회안) 2
4.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위원회안) 2

(11시49분 개의)

○委員長 姜在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선거 이후 첫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솔직히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국민의 여망대로 정치개혁의 정도로 일을 해 왔느냐에 대해서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개혁의 중심은 결국 국회인데 시민단체나 또 학계 등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중요한 과제가 많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회가, 특히 정치개혁특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렴할 수 있도록 좀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개특위 논의는 과거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소 당리당략적인 측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걸 다 털어버리고 진정 정치의 근본들을 바꾼다는 자세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대선 이후의 새로운 상황을 잘 반영해서 다양한 정치개혁의 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정치개혁을 빨리 이룩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진보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李秉吉 입법심의관입니다.

田春浩 입법조사관입니다.

그러면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田春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위원회안)

- 2.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위원회안)
- 3.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위원회안)
- 4.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위원회안)

(11시53분)

○委員長 姜在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중개정법률안, 2항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제3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4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許泰烈 위원 나오셔서서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泰烈 委員 許泰烈 위원입니다.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002년 11월 11일, 11월 12일 소위원회와 2003년 1월 14일, 1월 16일, 1월 20일 간사회의 결과 본 위원을 포함하여 千正培 위원, 李敬在 위원, 林仁培 위원, 金龍學 위원, 金宅起 위원, 金權泰 위원, 宋永吉 위원의 서면동의로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하여 새로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사·보임은 원칙적으로 동일회기 중에는 1회에 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사·보임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한 후에만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대통령

이 요청한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다섯째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의안발의 요건을 완화하고, 여섯째 국회 결산심사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결산심사 결과 정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요구건을 도입하며, 일곱째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여덟째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고 예외적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아홉째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실시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각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열 번째 대정부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두질문은 폐지하고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20분간 하도록 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열한 번째 국회가 감사원에 대한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 및 조사를 요구하고 이 경우 감사원은 3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되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 및 조사를 마치지 못 한 경우에는 중간보고 후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2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및조사청구제도를 신설하고, 열두 번째 국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정기회 개회 전에 완료하도록 하는 조기결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관하여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심사

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되 그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 10일 이내에 마치도록 요청하며 동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는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인사청문회와 관련 자료제출요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경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배제하고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전심의 등을 위하여 국정감사 또는 조사뿐만 아니라 일반안전의 심의에도 그 의결로 검증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성안하여 심사보고한 이들 4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在涉 許泰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正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正培 委員 許泰烈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구라고도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사항 중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 및 조사청구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개정안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청구 그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수정하면서 감사 및 조사청구로 바꾸셨어요.

우선 제 질의는 감사하고 조사가 어떻게 다르

며 왜 이것을 추가했는지 또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감사원이 감사 말고 조사라는 것을 따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법 수정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제11조제2항 단서, 우리가 지금 수정안에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인사청문회법 수정사항이란 유인물 1페이지 첫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사청문을 마쳤으나 폐회 또는 휴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좋은데 논리적으로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장이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알 수 있습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회의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장에 대해서 별도 보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의장이 대통령에게 송부하려면 우선 의장이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점에 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인사청문회법 수정사항이라는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제6조에 수정안 제3항으로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2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더 주어서 하도록 하는 것, 그 내용에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아까 의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인데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통령으로서 20일 이내에 송부,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서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송부, 그러니까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를 송부 받지 못한 경우’라든가 이렇게 해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대통령은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라는 부분도 표현으로서는 “그 기간을 정하여”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을

마칠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 의견을 송부할 것을 요청해야겠지요. 그래서 그 점도 자구수정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沈揆喆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沈揆喆 委員** 예, 沈揆喆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84조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 개정안의 취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살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종래에 협의조항도 없었던 것을 개정해서 지금 협의해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강화해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살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지금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살리는 데는 동의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요. 그러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까지 상임위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심의 하다보면 상임위에서조차도 논의되지 못한 예산으로 필요불가결한 신규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빼놓지 않고 모두 망라해서 심의한다는 것을 우리가 100%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안의 새 비목 설치까지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요구한다면 연내 예산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과 같은 경우 2003년 총선을 앞두고 예결위원이 아닌 국회의원은 거의 다 국정감사 끝나고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역구 활동을 할 겁니다. 새 비목 설치하는 데 동의권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 소집해 봐야 상임위에 몇 명이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사정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예결위의 예산심의 확정권의 축소를 가져오거나 예산심의회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결위가 상설화되어 있어서 예결위 자체의 권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예결위 권능을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러한 규정을 우리가 구태여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절충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살리고자 할 때에는 동의를 필요로 하게 하고, 만일 상임위에서조차 간과해서 논의되지 못했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냥 지금과 같이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姜在涉** 예, 朴柱宣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朴柱宣 委員** 지금 沈揆喆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와 관련된 제84조제5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새로운 결정을 할 때는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국회법이 개정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84조제5항의 기본 취지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삭감된 예산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새로이 비목을 설치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했던 예산에 대해서도 심사결과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존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상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전체 예산 중에서 자기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만 예비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상 부끄러운 자화상이긴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아주 심도 있고 아주 정확하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가부를 결정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안이 동의를 마냥 지연되어서 예결위 심사도 지연되고 더욱이 본회의 예산심의 절차가 지연되어 가지고 적정한 기회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가 허다할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국회에서도 불필요한 정쟁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예산의 삭감문제가 정쟁과 관련된 부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예산심의가 부단히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협의하는 규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협의를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첫 번째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협의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권위랄까 심도 있는 검토결과가 예결위에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부득이 동의제를 채택해야 되겠지만 마냥 동의를 상임위원회에 맡길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서 시간상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첫째로 저는 협의제를 그대로 운용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위원님 뜻이 반드시 동의제로 가야 한다면 적어도 48시간 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예결위에 도달되지 않았을 때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이런 시간적인 제한규정을 두어야만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姜在涉 金容鈞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容鈞 委員 저는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千正培 위원께서 청문을 마쳤으나 폐회 또는 휴회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공감을 합니다. 또한 제6조에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의 경과를 송부받지 못한 때에 10일의 연장을 요구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데에도 역시 동의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 인사청문회법이 현재 소위 우리가 말하는 권한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4대 공직자, 국정원장, 검찰청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직위에 있는 공직자가 종래에도 청, 감청, 불법수사, 계좌추적, 사찰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권한남용을 통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그 전력을 생각해서 지난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李會昌 후보와 盧武鉉 후보 공히 이 네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들과 같이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盧武鉉 당선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장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의 검증을 받아서 임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지난날과 같은 그런 불법계좌 추적이라든가 정치사찰의 목적에 권력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 이미 盧武鉉 후보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제안이 왜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누가 답변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 되면 적절한 시간 내에 다시 금융감독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대통령 후보자가 우리 5000만 국민에게 약속한 그 공약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서 실현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법 개정법률안에서 본 위원은 제79조제1항의 의안발의 요건을 20인에서 10인의 찬성으로 완화시키는 데 대해서 이것이 의원입법의 남용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의원입법 제안서를 읽어봅니다. 마는 거기에는 의원입법이 상당히 남용된 부분의 제안도 종래에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더욱 더 남용하게 하는 결과도 되지 않을까 매우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회가 정기국회 동안에 예산 부수법안만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권이고 또 국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는 정기국회입니다. 이 정기국회가 예산만 만지는 정기국회가 아닙니다. 국정조사도 하고 예산도 하고 입법도 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90일에서 100일 가까이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하고 다른 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본 위원은 매우 의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조항은 앞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沈揆喆 위원님이나 朴柱宣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국회의 기능을 어렵게 만들 조항으로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가 주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

결정을 해야 되는 12월 2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라는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심의의 지연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가 현재 전원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 그 예산심의 기능을 너무 제한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국정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시키는 경우에는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까마는 새 비목의 설치에까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사업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 새로운 정책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될 때 이것을 저지하게 되는, 장애가 되는 조항으로 생각되고 예결위원회의 권한을 너무 제한하는 부분이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안설명한 내용은 작년 11월 7일 인가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고 난 후에 여야 간에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2단계로 정치개혁을 해야 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金容鈞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감독위원장이나 나아가서 장관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다음 정치개혁특위가 열렸을 때 얼마든지 논의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그럴 필요 없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안건 중에 조금 이견이 있다든지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容鈞 委員** 잠시 의사진행말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 제도로 운영되어 가지고 다른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그 밖의 다른 소위원회에서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국회법 또 예결위원회 관계, 전혀 우리 소위원회에서 들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각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여야가 합의가 됐다 그래 가지고... 여야 합의는 됐습니

다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개특위가 계속 운영되겠습니까마는 이 안건을 전부 쪼개 가지고 각 소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서너 명 여야 간에 합의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당론이라고 그런다든지 위원회안이라고 그런다든지 해서 다른 소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委員長 姜在涉**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李康來 위원님, 그 얘기하시려고 하면 그만하시지요.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金學元 위원님 하세요.

○**金學元 委員** 먼저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나온 이 개정안에 관해서 본 위원은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첨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국회법 제79조 제1항에 관해서 개정안에 보면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20인 이상 요건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께서 혹시 의원입법이 남용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법에 대한 발의이고 발의된 입법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이러한 여과과정을 거치면서 또 제정입법인 경우에는 공청회까지 열어서 심도 있게 심의·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남용 입법에 대한 것은 상당히 걸리지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도 제가 한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회법 33조1항에 보면 교섭단체에 관해서 20인의 요건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입법을 20인 하던 것을 10인으로 완화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완화시켜서 의회활동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원내교섭단체에 관한 요건도 20인에서 당연히 10인으로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국의 경우도 2명, 5명, 7명, 10명 정도로 원내교섭단체 요건이 되어 있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20인으로 꼭 묶어 놓은 나라

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래에 1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유신헌정권 때 다른 생각으로 이것을 20인으로 묶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독소적인 법안은 반드시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법안이 옛날에 운영위원회에서 일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야의 격돌로 인해서 운영위로 왔다가 국회법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정치개혁특위로 지금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이 법안 개정안과 별도로 지금 현재 계류되고 있는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요건에 관한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조속히 다루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해 주시고 소위원회 결론에 따라서 전체회의로 넘길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알겠습니다.

다음 **李承哲** 위원!

○**李承哲 委員** 국회법 수정사항 중에서 법제기술상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단 감사라는 법률개념은 조사를 포함하는 광의의 법률용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감사 및 조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千正培** 위원님이 지적하시피 그러한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감사 및’이 아니고 ‘감사 또는’ 이렇게 되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택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감사 청구라는 조항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거기 보면 감사청구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한 보고 또 2항에는 중간보고, 연장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청구 등’ 해서 ‘등’ 자가 붙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金宅起** 위원!

○**金宅起 委員** 국회법중개정법률안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히 국회법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국회법 제48조6항을 보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중 1회에 한하여 개선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소

위에서는 임시회의 경우는 사보임을 금지시켰습니다. 금지 시키고 정기회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왜 그러냐 하면 임시회의가 대강 30일이기 때문에 한 회에 한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특히 예외규정을 두어서 질병의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임시회의 경우에 동일 회기중 1회에 한하여 개선될 수 있다는 문장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무적인 잘못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이것을 바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답변은 다 합쳐서 나중에 합시다.

全在姬 위원님!

○**全在姬 委員** 우선 저는 자구수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千正培**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朴柱宣**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는 시간의 제한을 두더라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협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들이 해 보면 삭감할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낭비될 우려가 많고 집행되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통해서 증액을 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협조를 해서 차제에 인사청문회 대상에 금융감독위원장을 포함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盧武鉉** 대통령당선자께서 대통령후보 공약에 금융감독위원장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 국무위원 전원이 인사청문회를 받음으로써 공직자가 검증되고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그런 좋은 풍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차에 있어서는 미국 정도로 모든 국무위원에게 인사청문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기히 **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약속한 것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합의만 하면 이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趙培淑 위원님!

○趙培淑 委員 다름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인사 청문회 실시 시기에 대해서 명문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빅4를 보면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물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경찰법 제11조2항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의 임명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경찰위원회의 동의라는 절차도 필요하고 그것이 끝난 뒤에 행자부장관이 또 제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인사청문회의 시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전이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 이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청장은 다른 빅4하고 다르게 임명절차가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 인사청문회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것을 좀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의 눈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빅4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그 결론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지만 실제로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위인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임명이 되는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이것이 약간 법리상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빅4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정치권이 뭔가 개혁을 한다는 것을 너무 빨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서 시간에 쫓기듯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법적으로 모순되지 않게 정리를 하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朴柱宣 위원님!

○朴柱宣 委員 국회법 제127조의2항과 관련해 가지고 자구수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해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응해야 된다고 필요적으로 응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어떤 사안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가 특정해야 할 사안의 범위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국회가 현재의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원의 직무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도 특정을 해서 감사를 청구했을 때에 뒤의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그 규정을 내세워서, 신법이 구법을 우선한다 해 가지고 감사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보고 또 이 해석을 둘러싸고 나중에 정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사항에 관한 사항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을 좀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법해석, 또 나중에 정쟁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姜在涉 沈揆喆 위원님!

○沈揆喆 委員 아까 국회법 제84조5항과 관련해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견해의 요지는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살릴 때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불가결한 신규사업인데 상임위에서 간과하고 심의를 못한 것, 이것은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 비목 설치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협의만으로 족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이고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사정 때문에 동의를 끝까지 관철하려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결위 여야 간사와 협의해 가지고 심사기간을 정해서, 이것을 아까 朴柱宣 위원님은 48시간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꼭 48시간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심사기간을 정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동의나 혹은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해서 그 기간 내에 동의결의나 협의결과 통지가 없을 때에는 동의나 협의를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千正培 위원님께서 국회

법 제127조의2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조항에서 감사 및 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먼저 李承哲 위원께서 ‘밋’을 ‘또는’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45조에 심사청구에 관해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감사원법 45조에 보면 감사로 하게 되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작성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고 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3개월 내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가 꼭 감사위원회의 결의까지 거친, 예컨대 감사원의 최종 처분까지 거친 결과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조사만으로도 국회는 그 나머지의 정치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의로 조사만으로 족할 경우에는 조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단축해서 하는 것이 국회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감사 또는 조사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金容鈞 委員 조사의 근거조항이 무엇입니까?

○沈揆結 委員 감사원법 45조에 보면, 이것은 ‘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항이기는 합니까마는……

○千正培 委員 그것은 아니지요. 국회가 정식 요구를 해서 정식으로 받아야지……

○沈揆結 委員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가 정식 감사를 꼭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다른 위원님 발언할 것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호소 드리는 것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어떤 분은 금감위원장이나 더 확대하자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심한 것은 빼자고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면 이것은 우리가 작년 연말에 다 합의해 놓은 것이고 오히려 지금 시대 추세나 또 대통령 후보들이 더 확대하자고 나름대로 다 얘기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합의된 것이 여기까지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감위원장 부분도 양쪽이 쉽게 합의만

되었으면 이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당이 반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뒤로 돌리고 또 무슨 교섭단체 숫자를 내리고 올리고 이런 문제도 다 뒤로 돌리고 지금 쟁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고 하는 이런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조금 정회해 가지고, 한 5분만 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의문 나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 설명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간사들끼리 한 5분 내지 10분 조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在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동안에 우리 간사님들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송부 조항이라든지 또 국정원장 등 인사청문회 심사기간 연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항의 자구를 잘 보완하는 문제는 위원장인 저에게 맡겨 주시면 제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千正培 위원님 말씀하신,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할 때 감사원법이 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특정해서 감사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견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지금 합의된 내용은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감된 것으로 하고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72시간 내에 동의를 없으면 예결위원회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보임 문제는 金宅起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문구를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및 또는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라는 용어는 감사에 다 포함된 용어이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견해가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은 있

지만 가능하면 이대로 종결하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구상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한 것은 나중에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고요. 또 나중에 서로 당에서 큰 문제가 발생해서 고칠 일이 있으면 본회의 같은 데 가서 얼마든지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자구·체계 수정에 기대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체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제2항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제3항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4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된 법률안 중 자구·체계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4개의 개정법률안을 합의·도출하는데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소위를 더 활성화하고 또 아까 金容鈞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위에서 소위원만 알아 가지고 갑자기 내놓고 의결해서는 안 되니까 소위원회에서 일정한 합의가 있으면 또 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비공식 간담회라도 하든지 또 회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대를 갖고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전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님들은 앞으로 정치개혁특위 일정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出席委員(17人)

姜在涉 康奉均 金容鈞 金宅起
 金學元 朴柱宣 沈揆喆 安商守
 安泳根 李康來 李承哲 李柱瑩
 全甲吉 全在姬 趙培淑 千正培

許泰烈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李昌熙
 전문위원 安秉玉

【報告事項】

○特別委員辭任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渉團體
정치개혁 특별	薛勳	康奉均	새천년민주당
	李鍾杰	趙培淑	

(2002년11월9일자)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渉團體
정치개혁 특별	李敬在	李柱瑩	한나라당
	李秉錫	李承哲	
	林仁培	安泳根	

(1월20일자)

○議案回附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11월9일 심재권·김홍신·서상섭·신기남·김방림·설훈·박양수·정장선·정범구·김운용·정동영·김충조·김덕규·김영진·김성순·김근태·김홍일·김영환·강운태·임종석·김원기·조배숙·김희선·김화중·천용택·고진부·장성원·최용규·김택기·김태홍 의원 발의)

11월9일자 회부됨.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택기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김택기·박인상·유재건·천정배·신기남·정동채·정세균·김태홍·추미애·이종걸·이미경·김근태·김방림·최용규·허운나·배기운·이재정·김희선·정장선·송영길 의원 발의)

11월11일자 회부됨.